

선 람	기 관 의 장

제915호    2016. 5. 4. (수)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51호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고시----- 2
- 삼척시 고시 제5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320호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6
- 삼척시 공고 제325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13
- 삼척시 공고 제330호 2016년 어촌체험장비 신청 안내 공고----- 20
- 삼척시 공고 제341호 삼척시 건축위원회 위원모집 공고----- 22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 2016 - 51호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삼척시장

대상시설(지역)			지정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명 (지역)	소 계 지	소 유 자 (결 유 자 관 리 자)				
오십천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삼척시	물놀이 위험지역	A	수시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현황 -

○ 시설(지역)명

-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4리 오십천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사유

-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이며, 2010년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임.

○ 위치도



○ 전경사진



삼척시 고시 제2016 - 52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0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용소길 199 외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5. 0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 111-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용소길 199	20160504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지형지물(용소)명칭 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8-13, 8-12	강원도 삼척시 박걸남로 1105-1 (적노동)	20160504	건물신축	20090626	역사인물(박걸남)이름활용(문화재명칭)	
		이	하	여	백		

삼척시 공고 제2016-320호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와 「삼척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삼척시장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청렴도 향상 등 시책평가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안 제2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안 제3조)
- 원고료가 포함된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마련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월 6시간으로 제한(안 제15조)
-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환 의무화(안 제21조)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마련(안 제20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 전화 : 033-570-3717
  - FAX : 033-570-3131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samcheok.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글.

[붙임 1]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공무원”을 “공무원,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징계양정기준) 시장이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칙 별표 2의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함작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받은”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  
-----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게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필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되, 이 규칙 별표 2의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붙임 2]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 의견제출자 :

계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공고 제2016- 325호

###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일

### 삼척시장

#### 1. 제정이유

- '80년대 석탄산업합리화로 폐광에 따른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를 조성하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조례 적용시한이 2015년 12월 31일 시효 만료.
- 폐광지역 공동화 현상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연장된 특별법 적용시한까지 새로이 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보조경비의 범위(안 제2조)

- 학생장학금, 학생기숙사비 및 통학용 교통비, 학과특성화 사업

##### 나. 보조경비 재원조성(안 제3조)

- 폐광지역개발기금, 삼척시 일반회계예산, 기타 수입금

##### 다. 학사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안 제5조~제11조)

- 위원구성 : 13인 이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 : 부시장

- 위 원 : 삼척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인, 시의회 의원 3인, 캠퍼스 과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지역대표자 4인

- 위원임기 : 2년 (연임가능)

- 주요기능 : 보조경비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 우선순위 결정 등

##### 라. 조례 적용시한(부칙 안 제2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의견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처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자원개발과(우 25914)



- 연락처 : 삼척시청 자원개발과 개발기획팀 (033-570-4053)

- F A X : 033- 570-3187

#### 4. 참고사항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안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지원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경비의 범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이하 “캠퍼스” 라 한다)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할 수 있는 범위(이하 “보조경비”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퍼스의 학생장학금
2. 학생기숙사 및 통학용 교통비
3. 학과 특성화 사업

**제3조(보조경비 재원)** 캠퍼스 보조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관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지역개발기금
2. 삼척시 일반회계예산
3. 기타 수입금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강원대학교 총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캠퍼스 보조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캠퍼스 보조경비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학사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조경비 신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삼척시 과장급이상 공무원 2인, 시의회 의원 3인, 캠퍼스 과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지역대표자 4인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급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보조경비 지원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경비 신청사항 심의  
 3. 보조경비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

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 조례명 :
- ▣ 의견제출자 :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6 - 330호

### 2016년 어촌체험장비 신청 안내 공고

2016년 어촌체험을 위한 장비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일

### 삼척시



#### 1.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원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시비	자담	
어촌체험장비 지원 사업	1식	240,000	200,000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수상업활동조합 어촌계중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되었거나 향후 지정 신청 계획중인 어촌계</li> <li>- 어촌체험 또는 마을 주민 중 인명안전구조요원 자격증 소유자 2인 이상 어촌계</li> <li>- 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수상레저 사업등록을 할 수 있는 어촌계</li> </ul> </li> <li>○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 어촌계당 30,000천원</li> <li>- 사용자 : 체험장비구입, 체험숙제, 체험마을 운영 등</li> </ul> </li> </ul> <p>※자부담 20% 부담 가능한 어촌계</p>

#### 2. 사업신청 제외대상 어촌계

- 가. 지원사업비중 20% 자부담 납부하지 않는 어촌계
- 나. 수상인명 구조 자격을 보유자 없는 어촌계
- 다. 해양경비안전서의 수상레저 사업등록을 할 수 없는 어촌계

#### 3. 사업신청

- 가. 신청기한 : 2016년 5월 18일까지
- 나. 제출기관 : 삼척시청 해양수산과
- 다.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서식), 어촌계 회의록

<별지서식> 사업신청서 1부.

【 별지 서식 】

## 사업신청서

### 1. 사업명 :

마을명	신청구분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부담	

※ 신청구분(장비지원, 세입마을 운영, 제임축계 등)

### 2. 세부 사업계획

신청내용	사업비(천원)			사업기간	비고
	계	보조	자부담		

○ 자기부담 조달계획

위와 같이 2016년도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연락처 : )

성명 : (인)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 공고 제2016-341호

## 삼척시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삼척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삼척시건축조례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 삼척시장

1. 자격요건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도시계획 또는 건축학 등을 전공한자
2. 관련근거 : 삼척시건축조례 제5조제5호
3. 모집인원 : 2명
4. 공고기간 : 2016. 05. 09 ~ 2016. 05. 24 (15일간)
5. 제출서류
  - ① 삼척시건축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별첨”
  - ②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 ③ 건축기사·산업기사·도시계획등 관련기사 자격증 사본 1부(취득자에 한함)
6. 제출장소 : 삼척시청 건축과 (우편접수 불가)
7. 제출기한 : 2016. 05. 24일한
8. 기타 세부적인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033-570-3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이 지나서 접수되는 신청서는 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삼척시 건축위원회 위원 지원신청서

○ 신청인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최종학력 및 전공학과 : 대학(교) 과

상기 본인은 삼척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삼척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하며 위원으로 임명될 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6. 5. .

위 신청인 : (인)

삼척시장 귀하